

## 성신교정 장학금 지급규정

제정 1992.

개정 2018. 3. 1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이하 ‘본교’ 라 한다)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및 교외 인사나 각 장학재단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교의 장학업무와 그 지급업무는 교학부처장이 관장한다.

제4조(수혜대상) 본교의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014. 3. 1 ]

1. 학부 재학생
2. 대학원 및 연구과 재학생
3. 가정형편상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4. 기타 장학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자격제한) [삭제 2012. 3. 1]

제6조(교내장학금의 종류와 금액) ① 교내 각종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수입학장학금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일반전형과 성신특별전형 각각 상위1명 씩에게 지급한다.
2. 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A급(90점)이상인 자 중에서 각 학년별 상위 3명에게 각각 지급한다. 단, 대학수료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의 학점을 인정받아 해당학년에 이수해야 할 학점 2/3에 미달할 경우,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9. 1]
3. 하상장학금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B급(80점)이상인 일반학생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 9. 1]
4. 가족장학금은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그 중에서 저학년 학생에게 지급한다. 저학년의 기준은 학번, 생년월일 순으로 정하며,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해당 학년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의 2/3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급(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1/2014. 3. 1]
5. 대견장학금은 교구직원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대학원1~3학년)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 3. 1/2014. 3. 1]

6. 양업장학금은 교구직원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학부1~4학년)에게 지급한다.[신설 2012. 3. 1/2014. 3. 1]

7. 근로장학금은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8. 외국어장학금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 성적 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한다[별표1-1] 참조. [신설 2006. 12. 5, 개정 2018.3.10]

9. 선교장학금은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교회의 인재양성을 위한 본교가 초청한 성직지망 외 국인 신학생에게 지급한다.

10. 루도비꼬장학금은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수도자 신입생에게 지급한다.

11. 해외연수장학금은 어학연수, 해외문화탐방 등 본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한다.

12. 신학원장학금은 교구 직원자의 추천을 받아 신학원에서 생활하며 양성을 받는 성직지망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14. 3. 1]

② 교내장학금의 지급금액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7. 10. 25]

제7조(교내 장학생의 선발) ① 교내 각종 장학생은 매학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② 교내 장학생의 선발 시에는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충족할 목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8조(교외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교외 장학생은 국가기관, 교외인사나 외부 장학재단에서 추천 의뢰한 조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추천 및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외 장학생의 선발이 본교에 위임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12. 3. 1]

② 교외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제9조(장학금의 취소) 장학금의 수혜자가 자퇴 및 제적 처리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수혜) ① 장학금의 중복수혜는 허용된다. 단, 성적우수와 하상, 성적우수와 가족, 가족과 하상 장학금 간의 중복수혜는 불허한다.[개정 2012. 3. 1/2014. 3. 1]

② 국가장학금 및 공공기관의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1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3. 1]

제12조(대학원 장학금) ① 본교 출신자로서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성직자 및 수도자는 입학금을 면제하고 등록금의 50%를 면제한다.

- ② 본교의 재학생(신학생 및 수도자)은 대학원 입학금을 면제한다.
- ③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박사과정에 등록할 서울교구 출신 새사제에 한하여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대학원 교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신학부총장이 허락한 자에 한하여 등록금의 50%를 면제한다.

제13조(유학지원장학금) ① 본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공식적인 유학생 선발절차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유학지원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장학금액은 유학준비비와 유학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학지역, 유학기간,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4. 3. 18]

제14조(입학금의 감면) 학부 신입생 중 수도자와 평신도 학생에게는 입학금의 50%를 감면한다. [신설 2017. 3. 14]

####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2년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199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⑦ 본 개정 규정(제6조, [별표1])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본 개정 규정([별표1])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본 개정 규정(제6조, 제10조, [별표1])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 본 개정 규정(제6조, [별표1])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⑪ 본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별표1], [별표2])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⑫ 본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별표1])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⑬ 본 개정 규정(제4조, 제6조, 제10조, [별표1])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⑭ 본 개정 규정([별표1])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⑮ 본 개정 규정(제14조)은 201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⑯ 본 개정 규정(제6조, 별표1, 별표1-1)은 201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lt;개정 2016.5.12., 2018.3.10.&gt;

장학금명칭	수혜대상	지급액
우수입학	일반전형 수석 입학자	1학기 등록금의 2/3 (입학금 제외)
	성신특별전형 수석 입학자	1학기 등록금의 1/3 (입학금 제외)
성적우수	학년별 성적 1등 우수자	학부 등록금의 2/3
	학년별 성적 2등 우수자	학부 등록금의 1/2
	학년별 성적 3등 우수자	학부 등록금의 1/3
하상	일반학생 신청자 중에서 선발된 자	<학부> A급(90점) 80만원 B급(80점) 60만원 <대학원> A급(90점) 100만원 B급(80점) 80만원
가족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저학년 학생(저학년의 기준은 학번, 생년월일 순)	등록금의 1/2 (입학금 제외)
대건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대건A: 대학원1, 대건B: 대학원2~3)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양업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학부1~4)	등록금의 20% (입학금 제외)
신학원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아 신학원에서 생활하며 양성을 받는 성직지망자	신학원비의 80%
근로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근로시간에 따름
외국어	토익 900점 이상, 토플 100점 이상	100만원
	토익 800점 이상, 토플 88점 이상	50만원
	토익 750점 이상, 토플 80점 이상	20만원
선교	성직지망 외국인 신학생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루도비꼬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수도자 신입생	1년간 학기당 200만원
해외연수	어학연수	100만원
	해외문화탐방	팀당 300~400만원

[별표1-1] 외국어장학금 지급기준 &lt;신설 2018.3.10.&gt;

금액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TOEIC	TOEFL (IBT)	TOEFL (CBT)	TestDaF	DELTA
100만원	900이상	100이상	250이상	TDN 4	DELTA B2
50만원	800이상	88이상	230이상	TDN 3	DELTA B1
20만원	750이상	80이상	213이상	ZD	DELTA A2

금액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CELI	CILS	DELE	JLPT	HSK
100만원	3	Due	B2	N2	4급
50만원	2	Uno	B1	N3	3급
20만원	1	A2	A2	N4	2급

[별표2] 교외장학금의 종류

- 학장특별장학금
- 김대건성인장학금
- 외국인신학생양성장학금
- 꾸르실료장학금
- 바오로사도선교장학금
- 국가장학금
- 보훈장학금